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이종배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2134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9월 06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김길영, 김영철, 김재진,
김종길, 김혜지, 박춘선,
송경택, 유만희, 이병운,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호정, 황유정, 황철규
의원(15명)

1. 주문

- 특정사안에 대하여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성명을 발표하여,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장들을 교육장직에서 배제하여, 징계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직권 남용,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였음.
- 대법원 선고 직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장 10명 등 150여 명의 교육전문직, 학교관리자들이 “교육감 해직말라”는 집단 성명을 직위와 성명을 밝히며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런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위반소지가 농후함.
- 특히 교육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상 의무를 다하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심히 부적절한 처사임.

- 이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원활히 하고, 오는 10월16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배제가 절실히 요구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 이송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 대법원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에 대하여 지난 8월29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 선고 직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장 10명 등 150 여명의 교육전문직, 학교관리자들이 “교육감 해직말라”는 집단성명을 직위와 성명을 밝히며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런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집단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위반소지가 농후하다.

특히 교육장들은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상 의무를 다하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장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심히 부적절한 처사라 할 것이다.

또 이들이 조 전 교육감의 혐의가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검찰 기소, 제1심법원, 제2심 법원에서 예외없이 인정된 상황에서 대법원 최종 선고 직전 이런 집단성명을 내는 것은,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인간적 정의에 따른 선처 호소라기보다는 교육감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지지결집 행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원활히 하고, 오는 10월16일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고위 공직자의 직위 배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집단성명에 참여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10명을 즉각 직위해제하여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 09. 00.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